2-3	「국가공무원법」 등에 불법 부당 명령 거부권 규정	인사혁신처장

□ 권고 내용

○ 국회의장과 인사혁신처장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에 따른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**국가공무원법 등에** “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을 경우,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”는 방식으로 **공무원이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**하기 바랍니다.

□ 이행 현황

○ **공무원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, 의견진술권 등을 명시**하는 내용의 **국가공무원법 개정 의원발의안 2건***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 **22대 국회 개원으로 폐기**

* 기동민의원안(’20.6.19), 전용기의원안(’22.4.12)

※ 참고로, 지난 20대 국회에 관련 내용의 정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, 당시 상임위 논의 결과 보류(’18.3.23)

○ **22대 국회 개원**에 따라 유사한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**개정안 5건*이 발의**되어 **현재 국회 계류 중**

* 용혜인의원안(‘24.12.27.), 이강일의원안(’25.1.23.), 한창민의원안(‘25.7.4.), 권향엽의원안(’25.12.2.), 박정현의원안(‘25.12.17.)

□ 향후 계획

○ 국회 계류 중인 관련 국가공무원법 법안 심사에 **적극 대응**